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46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고동진·박덕흠·성일종

김예지 • 박정훈 • 조지연

김위상 · 김소희 · 송석준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,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'극히중대한 범죄'로 간주되어야 함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,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 치가 부재함.

이에 '18세 미만의 아동'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,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'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'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, 미래 세대의 건강한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아동에 대한 죄의 처벌 가중)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 에 2배까지 가중한다.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 가 가중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0조의2(아동에 대한 죄의 처
	벌 가중) 18세 미만의 아동을
	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
	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
	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
	중한다. 이 경우 상습 등의 이
	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
	<u>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</u>
	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
	추가 가중한다.